

# 『문화예술경영학연구』 편집위원회규정

2008년 10월 1일, 제정  
2014년 6월 1일, 1차 개정

## 제1조 (목적)

본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이하 학회)의 『문화예술경영학연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규정은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문화예술경영학연구』의 발간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역할)

1.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과 편집위원(이하 위원), 편집간사(이하 간사) 등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연락사항과 편집·심사 절차 등에 관련된 일반 업무를 담당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와의 협의에 의해 연구 업적이 탁월한 회원 가운데 선정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4.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문화예술경영학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의 결정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6. 위원회는 『문화예술경영학연구』 상반기 호를 2월 28일, 하반기 호를 08월 31일에 발간한다.

## 제3조 (연구윤리)

1. 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고, 적절한 심사 조치를 취한다.
2. 위원회는 전공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져야 한다.
3. 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하고,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4. 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투고한 논문과 관련하여 특정한 인사를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감안하여 이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제4조 (회의)

1. 위원회는 학회지 발행 계획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연 2회의 정기편집회의 이외에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칙**

본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